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5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5. 19.
- 회부일 : 2023. 5. 25. (의안번호 : 23-82)

2. 제안이유

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 신설

-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범위(5급→6급) 확대
-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(신설)하여 위원회 관리 효율성 도모
-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/기피/회피 사유 구체적 명시

4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: 2023. 4. 6. ~ 4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상징물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,
안 제8조 제2항에 홍보·디자인·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범위를 5급에서 6급으로 확대하고, 위원회는 심의 안건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회 관리 효율성도 모하고자 하는 내용과,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/기피/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상징물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타 자치구를 볼 때 조례가 있는 12개 구¹⁾ 중 비상설로 운용중인 위원회가 3개구(서초²⁾, 강서³⁾, 양천⁴⁾), 상

1) 강동구, 강남구, 마포구, 노원구, 관악구, 서초구, 광진구, 양천구, 도봉구, 중랑구, 서대문구, 강서구
2) 제6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,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. <신설 2021. 9. 23.>
3) 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제9조에 따른 안전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.
4) 제11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 해당 자료를 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하며 7일 이상 지난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설로는 마포구뿐만 아니라 점을 볼 때 상징물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며,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/기피/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마포구 로고 및 상징물은 마포구의 브랜드 평판 및 대외 신뢰성을 나타내는 점을 볼 때 관계부서는 지속적인 브랜드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